

공학교육혁신센터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 수립과 공학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학교육인증관련 제반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기능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개발, 운영
 - 가. 공학교육 교육과정 개발 지원
 - 나. 공학교육 교육과정 분석, 연구
 - 다. 설계교육 연구 및 지원
 - 라. 공학교육 교수-학습법 연구, 개발
 - 마. 학습성과의 성취도 평가기법(rubric)개발
 - 바. 인증 지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
 - 사. 공학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
 - 아. 공학교육 인증 평가 지원
 - 자. 공학교육혁신과 관련된 대내외 활동 총괄 지원
2. 수학교육프로그램 개발, 운영
 - 가. 수학적 지식, 기술 및 자신감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, 운영
 - 나. 수학기반 교과목 수업지원프로그램 개발, 운영
 - 다. 수요)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학 교실 운영
 - 라.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 개발, 운영
 - 마.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 - 바. 수학 학습능력 부진자를 위한 학력보완프로그램 개발, 운영
 - 사. 수학영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, 운영
3.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행, 관리 및 운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
제3조의2(부센터장) ①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② 부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공과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프로그램주관교수) ①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및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주관교수(Program Director, 이하 “PD교수”라 한다)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PD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내 PD교수는 「공학교육인증제도운영에관한내규」 제3조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심화프로그램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PD교수는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의 2(프로그램보좌교수) ①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보좌교수(Assistant Director, 이하 “AD교수”라 한다)를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PD교수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② AD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AD교수는 PD교수가 총괄하는 프로그램의 제반 업무를 보조·지원한다.

제5조(연구원 및 연구원보)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자로 한다.

③ 연구원보는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원보는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직원연구원) ①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객원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③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조교) ① 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정책자문·협의회) ① 센터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·협의를 위하여 정책자문·협의회를 둔다.

② 정책자문·협의회는 센터장, 학부대학장, 자연과학대학장, 정보통신대학장, 공과대학장, 교무처장, 교육개발센터장, 대학교육혁신센터장 등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위원장이 되고 각 프로그램 PD교수는 위원이 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의2(자문위원회) ①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,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위하여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PD교수 경험이 있는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) ① 센터장은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, 공학교육인증업무, 수학교육학습프로그램 등에 관하여는 기관장의 권한을 행사하되, 일반행정에 관한 문서생산 및 접수, 예산요청 및 집행 등 일반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교무처 산하기구의 장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한다.

② 센터는 연구개발 결과 중 정책적 추진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본부 처 및 관련 대학에 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종전 수학교육학습센터장은 PD교수 경험이 있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